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계법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이 설명서를 통해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필히 참고** 바랍니다.
-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상품에 가입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가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 퇴직연금 이율보증형 상품설명서

- 본 상품은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 본 상품은 보험기간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상품에 대한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흥국생명 홈페이지([www.heungkuklife.co.kr](http://www.heungkuklife.co.kr)) 또는 퇴직연금 콜센터(☎ 1811-0710)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상품내용

구 분	내 용		
상품유형	원리금보장형		
가입대상	흥국생명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보험 계약자(사용자)		
상품개요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된 부담금을 설정된 단위보험별로 각 <b>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적용이율을 확정하여 적용하는 ‘고정금리’ 상품</b> 입니다.		
상품구조	<p>가입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해당 상품에 부담금이 납입된 경우 납입되는 부담금 별로 “단위보험”이 설정되며, 계약자는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이율보증기간)을 설정합니다.</p> <table border="1"> <tr> <td>이율보증기간</td> <td>1 / 2 / 3 / 5년 / 일단위 기간지정식(1년이상 3년이하)</td> </tr> </table> <p>납입된 부담금은 단위보험별로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의 만기일까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부리·적립되며, 만기일에 해당 단위보험의 적립금으로 다른 상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p>	이율보증기간	1 / 2 / 3 / 5년 / 일단위 기간지정식(1년이상 3년이하)
이율보증기간	1 / 2 / 3 / 5년 / 일단위 기간지정식(1년이상 3년이하)		
보험기간	이율보증기간과 동일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p>적용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하며, 각각 설정된 단위보험 별로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됩니다.</p> <table border="1"> <tr> <td>이율보증형 적용이율</td> <td> <p>회사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를 기준이율로 하며,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이때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p> <p>*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국고채·회사채·통안채·지방채 수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td> </tr> </table> <p>단, 기간지정식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지정한 보증기간의 연미만 일단위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절사, 6개월 초과인 경우 절상하여 연환산 후 해당 기간의 연단위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적용</p> <p>※ 적용이율은 매월 공시되며, 흥국생명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 href="http://www.heungkuklife.co.kr">www.heungkuklife.co.kr</a> &gt; 공시실 &gt; 퇴직연금공시 &gt; 원리금보장형상품 현황)</p>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p>회사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를 기준이율로 하며,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이때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p> <p>*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국고채·회사채·통안채·지방채 수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p>회사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를 기준이율로 하며,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이때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p> <p>*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국고채·회사채·통안채·지방채 수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p><b>중도해지에 관한 사항</b></p>	<p>이 상품은 언제든지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 보호 및 상품 안정화를 위해 단위보험 별로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도해지(상품변경 포함) 시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위보험 설정시점(재설정된 경우 재설정시점)부터 해지시점까지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은 「<b>이율보증형 적용이율 × 80%</b>」로 전 기간에 걸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때, 중도해지이율 계산 시 적용하는 적용이율은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 또는 재설정된 날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합니다.</li> <li>- 단, 다음의 사유(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li> <li>② 관계사 진출입으로 이전하는 경우</li> <li>③ 가입자가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제도전환 하는 경우</li> <li>④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li> <li>⑤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한 경우</li> <li>⑥ 근퇴법 제 16조제4항에 의거 적립금이 반환되는 경우</li> <li>⑦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자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계약이 전하는 경우(단, 동일사업자에 한함)</li> <li>⑧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li> </ul> </li> </ul>
<p><b>만기 재설정</b></p>	<p>가입자는 이율보증기간의 만기일에 해당 단위보험의 적립금으로 이율보증형의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자가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 설정을 위한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됩니다. 단, 기간지정식의 경우에는 이율보증기간이 1년 초과 1년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1년, 1년 6개월 초과 2년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2년, 2년 6개월 초과 3년 이하인 경우 3년인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적용이율은 회사가 단위보험을 자동 설정한 날(이하, “재설정된 날”이라고 합니다)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합니다.</p>

## 2. 기타 안내사항 (금융소비자 권리보호 안내 관련)

구 분	내 용
<p><b>예금자보호 여부</b></p>	<p>비대상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p>
<p><b>청약철회</b></p>	<p>청약철회는 관계법규에 따라 <b>“일반금융소비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b> (보장성 상품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 제 7항 제 3호의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됩니다.)</p> <p>일반금융소비자인 가입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부담금 등을 돌려드립니다.</p> <p><b>단,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부담금 납입일로부터 30일이 초과한 계약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b> (단,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로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p>
<p><b>위법계약 해지</b></p>	<p>가입자는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p> <p>회사는 계약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p>
<p><b>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b></p>	<p>이 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컨설턴트나 콜센터(1811-071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a href="http://www.heungkuklife.co.kr">www.heungkuklife.co.kr</a>)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a href="http://www.fss.or.kr">www.fss.or.kr</a>),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분쟁 조정의 신청 이후 또는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반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p>

🔴 주요내용 안내 확인 (설명받고 이해하신 사항에 대해 “확인”란에 (v)표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확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이 상품의 적용이율은 <b>단위보험을 설정한 날 또는 재설정된 날의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b> 되며, 홈페이지에서 공시되는 적용이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단위보험 별로 <b>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도해지(상품변경 포함)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b>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확인

설명내용
상품유형, 가입대상, 상품개요, 상품구조, 보험기간,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 만기재설정 예금자보호여부, 청약철회, 위법계약해지,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본 상품설명서를 교부받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들었음을 확인합니다.

- ※ 본 상품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과 상품설명서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본 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상품설명 내용’을 회사의 고객(계약자 또는 가입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고객은 설명받는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동 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세부 설명자료를 상세히 확인하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자 또는 가입자가 상품설명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서명(전자서명 포함)하실 경우에는 추후 소송이나 분쟁에서 계약자 또는 가입자 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명	(날인)
-----	------

영업담당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설명서에 따라 충분히 설명하였고, 설명한 내용은 이 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영업담당자	[소속]	[성명]	(서명·날인)
-------	------	------	---------

☐ 민원·상담·분쟁조정 연락처

구분	보험회사	외부기관			
상담·민원	전화상담 (1588-0710)	생명보험협회	콜센터	02-2262-6565	
			인터넷 상담	<a href="https://consumer.insure.or.kr/counselCase/qna/list.do">https://consumer.insure.or.kr/counselCase/qna/list.do</a>	
분쟁조정	웹모바일 (www.heungkuklife.co.kr)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e-금융 민원센터	<a href="https://www.fcsc.kr/">https://www.fcsc.kr/</a>	
		한국소비자원	콜센터	국번없이 1372	